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213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213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9. 27 선고 2000나1342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박BA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9. 27. 선고 2000나134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문CA이 1998. 10. 20. 당시 원고에게 금 2,330만 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문CA의 채무 전액을 연대보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차용증)은, 문CA이 위 날자에 원고로부터 금 2,33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 아래에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만, 갑 제3호증의 1, 2(약속어음)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차용증 작성일인 1998. 10. 20.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문CA 단독 명의의 액면금 1,300만 원, 지급기일 1998. 12. 15.로 된 약속어음 1장과 문CA과 피고 공동 명의의 액면금 1,030만 원, 지급기일 1999. 3.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위 문CA의 채무 금 2,330만 원 전액을 지급보증하기로 하였다면 위 어음 2장 중 액면금 1,030만 원의 어음에 대하여서는 공동발행하면서 같은 날 동시에 발행된 액면금 1,300만 원의 어음에 대하여만 공동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원고 스스로 갑 제1호증의 피고 명의의 기명 날인이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998. 10. 11.경 문CA과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주소지의 건물을 피고의 몫으로 하기로 하는 대신 문CA의 부탁에 따라 금 1,030만 원만을 보증하기로 하여 위 액면금 1,030만 원의 어음 1장을 문CA과 공동발행하여 주었을 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보증한 바 없고, 갑 제1호증상의 피고 명의의 기명 날인은 문CA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피고는 문CA을 사문서 위조 등의 죄로 고소하였다)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갑 제1호증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채무금 중 피고가 보증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1,030만 원만을 문CA을 대신하여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차용금 2,330만 원 전부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나(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미 제1심의 제4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1호증상의 피고 명의의 날인이 피고의 인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3호증의 1, 2의 어음 2장의 수취인란의 원고 명의의 기재는 동일한 필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액면금 1,300만 원의 어음의 발행인에 피고 명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원고 주장대로 위 어음 2장의 수취인란의 기재가 모두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차용증상의 피고 명의도 피고의 의사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는 차용증상의 채무 액수와 위 어음들의 발행 여부가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원고 주장대로 위 갑 제1호증의 작성 당시 원고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그의 아들인 소외 김CB가 연로한 원고(1922년생)를 대신하여 피고와 문CA를 만나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원고가 갑 제1호증의 피고 명의의 기명 날인이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이 상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 설시의 사정들만으로 갑 제1호증의 피고에 관한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시키기에는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고소는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음에 비추어, 피고가 문CA를 사문서 위조 등의 죄로 고소하였다고 하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 위 갑 제1호증과 갑 제3호증의 1, 2의 관계 등에 대하여 좀더 세밀히 심리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한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